

조선 숙종 대 장희빈의 왕비 책례 거행과 그 함의

박미선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조교수, 조선시대사 전공

erudite-pms@hanmail.net

-
- I. 머리말
 - II. 희빈 장씨의 왕비 책례 진행 경과
 - III. 희빈 장씨의 책비 의례와 그 특징
 - IV. 왕가(王家)의 책비 의례에 담긴 정치적 함의
 - V. 맷음말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4042721).

I . 머리말

책례(冊禮)는 오례(五禮) 가운데 가례(嘉禮)에 속하는 것으로 일국 내의 통치권자인 국왕이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에게 공식적인 임명장과 상징물로 그 지위를 부여하는 의식이다.¹ 또한 책봉 의례는 조선 국왕이 책(冊)으로 임명하는 조선의 의례일 뿐만 아니라 조공책봉체제의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 황제가 고명(誥命)을 수여하는 의식이다. 결국 책례는 국왕이 국제 질서 속에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정치적 의식이다.

오랫동안 책봉 의례는 조공책봉이라는 외교관계의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책례를 왕실문화, 의례문화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의궤가 새로운 자료로 주목되고, 책례 의궤에 대한 해제가 진행된 이후부터였다.² 이로써 국왕³, 세자·세손⁴, 왕비⁵의 책례 시행과 국내외에 있어서의 정치적

1 『국조오례의』에는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의 책례가 수록되어 있다(『국조오례의』 권 4, 「冊妃儀」; 『국조오례의』 권 5, 「冊王世子儀」「冊王世子嬪儀」).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藏書閣所藏儀軌解題』(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2); 서울대학교 규장각 編, 『규장각 소장의궤 해제집 3』(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3 윤승희, 「조선초기 조선국왕 책봉의례의 정비와 그 특징」, 『朝鮮時代史學報』 85 (2018).

4 윤정, 「정조의 세자 책례 시행에 나타난 ‘군사’ 이념」, 『인문논총』 57(2007); 김남윤, 「정조의 왕세손 책례 연구」, 『규장각』 37(2010); 유재빈, 「정조의 세자 위상 강화와 문효세자책례계명(1784)」, 『미술사와 시각문화』 17(2016); 임민혁, 「조선시대 왕세자 책봉례의 제도화와 의례의 성격」, 『조선 왕실의 嘉禮』(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이선홍, 「조선후기 李昀의 세자 책봉 주청 문제에 관한 일고찰」, 『한중관계연구』 2-2(2016); 손성욱, 「왕세자 책봉으로 본 청조관계」, 『동양사학연구』 146(2019).

5 신명호, 「조선 왕비와 명 황후의 책봉의례 비교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33(2012).

의미 등이 검토되었다. 뿐만 아니라 책례에서 사용되는 교명의 제작, 중국에서 하사하는 고명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책례 의물의 실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졌다.⁶ 아울러 조선 왕실의 책봉의례 전반에 대한 저서가 출간됨으로써 책례의 절차와 그 의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⁷ 그렇지만 주로 세자 책례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왕비나 세자빈 책례에 대한 연구는 소략하다. 또 조선 후기 왕비나 세자빈의 책례는 『국조 오례의』 완성 이후 대체로 전례에 따라 큰 변화 없이 거행되었을 것으로 여겨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책비의 유형도 한 가지로만 고정된 것은 아니며, 또 책례에도 변례가 있었으므로 왕비 책례에 대한 보다 풍부한 사례를 발굴하고 그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왕비의 책례는 ① 납비의(納妃儀)의 의절 가운데 책비(冊妃)와 ② 책비의(冊妃儀)로 구분되어 『국조오례의』에 수록되어 있다. 즉 육례(六禮) 가운데 한 의절인 책비로 왕비씨(王妃氏)의 사제(私第)에서 거행하는 책비례와 왕비위(王妃位)에 올라 책봉을 받는 대례(大禮)로 구분되며 두 예의 의식 절차는 차이가 있었다. 전자가 국왕과 혼례 과정 중에 거행되는 책비 절차였다면 후자는 선왕의 사후 세자가 왕위를 물려받아 세자빈이 부묘 후 책비의를 거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외에도 정비를 폐비한 후 후궁 가운데 책비를 거행하기도 하였고 폐비 후 다시 복위되는 과정에서 책비의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변칙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책비는 어떻게 거행되었을까? 특히 후궁으로 입궐한 후 책비의를 통해 왕비가 되는 책비 의례는

6 손계영, 「교명의 형태 연구」, 『장서각』 11(1978); 김경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조선 왕실의 教命粧縑」, 『고궁문화』 제2호(2008); 장을연, 「清代 조선왕실 冊封誥命과 조선 教命의 형태 비교연구」, 『藏書閣』 제24집(2010); 김경록, 「조선시대 봉전을 위한 인장과 고명의 역사적 의미」, 『명청사연구』 52(2019); 丘凡眞, 「崇德年間 清朝의 朝鮮 王室 冊封과 冊封文書」, 『명청사연구』 52(2019).

7 신명호, 『조선왕실의 책봉의례』(세창출판사, 2016).

정상적이었던 책례 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책비 의례는 군주제 사회에서 왕의 아내이자 세자의 어머니인 왕비의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로, 필연적으로 국왕권과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상적’인 책례 이외에 변칙적으로 발생하게 된 책례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책례의 명령권자인 국왕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희빈 장씨의 왕비 책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희빈 장씨의 책례는 기사환국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데, 이 사건이 숙종대 당파들 간의 세력 다툼의 결과라기보다는 국왕이 주도하여 왕세자를 반대하는 세력을 축출한 것이라는 선행 연구에 주목해 본다면⁸ 숙종 대 왕실에서 거행된 의례도 신권의 측면보다는 국왕권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숙종 16년(1690) 10월 거행된 희빈 장씨의 왕비 책례는 책비의 상징적 의미는 물론이고 숙종대 왕권이라는 정치적 의미도 포괄해서 보아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첫째, 희빈 장씨의 책비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왕비 책례는 정전과 편전 영역에서 거행되었는데, 그 의절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경왕후의 책비 사례를 가지고 서 비교할 것이다.⁹ 셋째, 희빈 장씨의 왕비 책례가 세자 책례와 연결되어 진행되었음을 세자 책례의 거행 시기, 책례도감의 구성원, 숙종의 언사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정치적 함의를 포착해 보고자 한다.

8 이상식, 『조선후기 숙종의 정국운영과 왕권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9 인경왕후 책비는 같은 숙종대의 사례이면서도 ‘납비의 의절 가운데 책비’가 아닌 ‘책비의’ 사례이므로, 이를 통해 변칙적인 희빈 장씨 책비 의주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II . 희빈 장씨의 왕비 책례 진행 경과

1. 희빈 장씨의 원자 출산

희빈 장씨가 후궁으로 왕비 책봉의례를 거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들을 출산하였기 때문이었다.¹⁰ 희빈 장씨는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의 친척이자 남인 세력과 관계 맺고 있는 우의정 조사석과 동평군 이항의 주선으로 입궁하였다. 이후 명성왕후에 의해서 숙종 9년(1683) 궁에서 쫓겨났다가 숙종 12년(1686) 다시 입궁하여 내명부 종 4품 숙원이 되었다.¹¹ 그 후 장씨는 정 2품 소의가 되었는데, 숙종 14년(1688) 10월 28일 왕자를 출산함으로써 내명부에서 그 지위가 변하였다.¹²

당시 숙종은 28세의 늦은 나이에도 아들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후궁 장씨 소생의 왕자를 원자로 정하고자 하였다. 신료들은 2품 이상이 수의해야 함을 아뢰었지만 숙종은 “대계(大計)는 이미 정해졌다.”고 하면서 정호(定號)할 뜻을 단호하게 드러냈다.¹³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숙종 15년(1689) 1월 11일 왕자의 호(號)를 원자(元子)로 정하고, 4일 뒤에는 종묘와 사직에 고한 후 원자의 생모인 장씨도 소의에서 정 1품 희빈으로 봉하였다.¹⁴

이러한 일련의 조처에 대해서 2월 1일 서인의 영수 송시열을 비롯한 대신들의 반대가 거세게 일어났다. 일반 가정에서 적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첨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바로 후사를 정하는 것은 종법에 어긋나고 도리에 어긋난다는 논리의 상소가 이어졌다. 하지만 숙종은 이러

10 이미선, 『조선왕실의 후궁』(지식산업사, 2021), 343-352쪽.

11 『숙종실록』 권17, 숙종 12년 12월 10일(경신).

12 『숙종실록』 권19, 숙종 14년 10월 27일(병인).

13 『숙종실록』 권20, 숙종 15년 1월 10일(무인).

14 『숙종실록』 권20, 숙종 15년 1월 11일(기묘), 15일(계미).

한 입장을 피력한 서인들을 파직하거나 귀양 보내거나 사사하고, 원자 정호를 수용하는 남인을 등용하는 ‘기사환국’을 단행하였다.¹⁵ 이처럼 숙종은 왕자 이윤(李昀)의 호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제거하면서 후궁 소생의 왕자를 원자로 정호하여 장자(長子)의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그렇지만 원자의 생모(生母) 희빈 장씨는 궁내에서 여전히 후궁이었으므로 원자의 적통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에 숙종은 그의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인현왕후의 폐비, 희빈 장씨의 왕비 정호, 청에 고명 주청 등을 관철시켜 나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숙종의 언사를 중심으로 다음에서 검토함으로써 후궁이 왕비가 되는 ‘비정상적’이고 ‘변칙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숙종이 얼마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갔는지 살펴보겠다.

2. 인현왕후의 폐비(廢妃)

숙종은 원자 정호 과정에서 서인세력을 대거 남인으로 교체한 후 숙종 15년 4월 21일 사헌부 관원들과 청대하는 자리에서 불쑥 궁중의 내전에서 자신이 당한 변괴(變怪)를 이야기하였다. 이 자리는 사헌부 관원들이 송시열의 죄를 국문할 것을 청하는 자리였는데, 숙종은 청대를 시작할 때부터 “단지 송시열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궁중의 내전에도 변괴가 있으니 대간이 다 논진(論陳)한 다음 말하겠다.”고 하며 운을 떼었다. 숙종은 사헌부 관원들이 송시열, 홍치상 등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말세로 올수록 인심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

15 『숙종실록』 권20, 숙종 15년 2월 1일(기해); 『숙종실록』 권20, 숙종 15년 2월 2일(경자). 기사환국의 내용 및 선행 연구는 이상식(2005), 앞의 논문, 87~93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내가 당한 것 같은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며 자신이 내전에서 당한 일이 그 어떤 일보다 매우 심각한 일임을 밝혔다. 그 변피는 인현왕후가 선왕과 선후의 말을 가택하여 장씨에게 아들이 없을 것이라는 간교한 말을 한 사실이었다. 당시 청대에 참석하였던 승지 이시만(李蓍晚)과 목창명(陸昌明)이하 사헌부 관원들은 국왕의 이러한 분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대체로 그들은 전하는 신들의 아버지[君父]이고 내전은 어머니[君母]로 어찌 대답해야 할 바를 모르겠으며, 외신(外臣)들에게 말하기보다는 대내에서 처분하고 가능하면 국왕이 너그럽게 용납하고 참아서 제가(齊家)할 것을 아뢰었다. 숙종은 이에 대해서 매우 노여워하며 자신 역시 제가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인현왕후가 선왕과 선후의 말까지 끌어다가 속인 만큼,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인현왕후가 원자를 자기 소생처럼 아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꾀력하였다.¹⁶

이틀 뒤인 23일은 인현왕후의 생일이었는데, 숙종은 신하들의 문안까지도 금지시켰다. 이러한 갑작스런 숙종의 분부에 영의정 권대운 등은 탄신일 문안이 일반적인 것임을 상소하고 합사로 아뢰었지만 숙종은 단호한 입장 이었다.¹⁷ 그리고 바로 3일 뒤 후비의 폐치를 결정하고, 4월 28일에는 중궁전의 유사들에게 공진할 물품도 중지시켰다.¹⁸ 5월 1일에는 실록을 상고하여 성종 윤씨 폐출과 중종 신씨 폐출 고사를 찾아냈고, 5월 2일 인현왕후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았다. 인현왕후 가례 때의 교명(敎命)·책(冊)·보(寶)·장복(章服) 등은 대내에서 불태웠으며, 5월 4일 폐비에 관한 일을 종묘와 효사전에 고하고 폐비의 교서를 반포하였다.¹⁹ 폐비의 연(輦) 1개, 보안(保鞍) 1개,

16 『숙종실록』 권20, 숙종 15년 4월 21일(정해).

17 『숙종실록』 권20, 숙종 15년 4월 23일(기축).

18 『숙종실록』 권20, 숙종 15년 4월 26일(임진), 28일(갑오).

19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5월 1일(병신); 숙종 15년 5월 2일(정유); 숙종 15년 5월 4일(기해).

마안(馬鞍) 2개는 사복시에서 불태웠다.²⁰ 이처럼 인현왕후의 폐비는 4월 21일 숙종이 갑작스럽게 자신이 당한 변괴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부터 불과 15일 남짓한 시간 내에 모든 것이 처리될 정도로 속전속결로 끝났다.

이상과 같이 숙종은 자신이 당한 변괴를 갑작스럽게 꺼내어 논의를 끌어내고 신하들에게 군모(君母), 즉 인현왕후에 대한 절의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군부(君父)인 숙종 자신을 따를 것인지 양자택일의 배수진을 치고 인현왕후를 폐비시킴으로써 왕후의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원자의 생모인 희빈 장씨를 대신하고자 하였다.

3. 희빈 장씨의 정호(定號)

폐비교서를 반포한지 겨우 이틀이 지난 후, 숙종은 영의정 권대운, 예조참판 유명현, 예조참의 유하겸을 뵙청에 모이게 하여 중관을 보내어 희빈 장씨를 왕비로 삼겠다는 전지(傳旨)를 내렸다. 숙종은 중궁의 자리가 비어 음교가 통달하지 못하므로 위호(位號)를 하루빨리 정할 필요가 있으며, 희빈 장씨는 후궁 가운데 덕이 드러나 일국의 어머니가 될 만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관들에게 예절에 따라 속히 거행하도록 하였다.²¹

이와 같은 전지를 받은 권대운[영의정]·유명현·유하겸[예관]은 서로를 돌아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영의정과 예관은 숙종에게 청대할 것을 아뢰었다. 시민당에서 권대운은 중궁의 자리가 이미 비었고, 숙종의 하교가 있으므로 신하로서 다른 뜻은 없지만 중대한 일이므로 관료를 뽑는 것과 같이 단 3명이 모여서 의논해

20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5월 9일(갑진).

21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5월 6일(신축).

정할 수 없으며, 이렇게 정할 경우 사체가 가벼워지니 2품 이상을 불러야 한다고 아뢰었다. 숙종은 희빈 장씨를 왕비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고 확고한 입장이었던 만큼 권대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노기를 떠며 수의(收議)하려고 하는 것인지 물었다. 이에 함께 입시한 유명현은 일이 중대해서 그런 것이지 신하들의 뜻을 순문(詢問)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다.

숙종은 당시 희빈 장씨를 왕비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하들과 논의할 문제가 아니며 국왕이 선택해서 결정할 문제로 생각하였다. 숙종은 비빈(妃嬪)을 간택할 때에도 단지 삼공(三公)과 예관(禮官)만을 불렀으므로 희빈 장씨를 왕비로 삼을 때에도 수의할 필요 없이 영의정과 예관만 불러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유명현은 후궁을 왕비로 삼는 일이 고례(古例)에는 없다고 하며 숙종이 그와 같이 정하더라도 이 사실을 여러 신하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아뢰었다. 숙종은 이에 2품 이상과 삼사를 즉시 폐초하여 시민당과 가장 가까운 시강원에 모이도록 하여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였다.

시강원에 모인 다른 신하들의 수의(收議) 행위는 없었다. 희빈 장씨를 왕비로 정하는 것은 숙종의 강경한 의지로 이미 정해진 것이었고 책례 택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와 정호 후 행사에 대한 숙종과 영의정, 예관의 간단한 논의가 있을 뿐이었다.

먼저 권대운은 장차 택일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숙종은 이미 역서를 보았고 바로 오늘이 길일이라고 하며 즉각적으로 시행할 의지를 드러냈다.²² 권대운은 세자빈이 승위(陞位)할 때의 책례는 3년 후에 행하는 것이 전례임을 아뢰었다. 더구나 당시에는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의 국흘도

22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5월 13일(무신).

있었다. 이에 대해 숙종은 ‘세자빈이 국흘 후 왕비로 승위 할 때의 책례’는 ‘국흔 중의 책례’와 달리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전례를 인정하였다. 다만 전례(前例)에서도 국흘 중 4일 째 성복하기 전에 위호를 정하였으므로 희빈 장씨의 경우도 미리 정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호를 하면 책례 전이라도 진상은 당연히 거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숙종: 세자빈이 승위할 때의 책례는 비록 3년을 기다린다고 하나, 정호하는 것은 성복(成服) 전에 행하였으니, 지금도 또한 먼저 정호하여 고묘(告廟)와 반교(頌敎)를 하고, 책례는 3년 후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유명현: 전부터 책례는 비록 3년을 기다릴지라도 진상(進上) 등의 일은 먼저 거행하였고, 고묘와 반교는 전례(前例)가 없습니다.

숙종: 진상은 진실로 마땅히 거행할 것이지만, 고묘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권대운: 마땅히 예조로 하여금 예(例)를 상고하여 처리하게 할 것입니다.²³

또 숙종은 정호 후 고묘와 반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지만 유명현은 전례가 없다고 하였다. 숙종이 전례를 몰라서 이와 같이 언급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변례이지만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숙종에게 진상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고묘에 대해서는 철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를 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숙종은 예조에서 이와 관련한 규례를 살피도록 하였는데, 확고한 그의 입장은 다음 내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예조: 정호한 후 태묘(太廟)에 공경히 고하는 것은 실로 그만둘 수 없고, 빠뜨리고 행하지 않아서 3년 후 책례(冊禮)를 기다리는 일은 참으로

23 『숙종실록』 권 21, 숙종 15년 5월 6일(신축).

온당치 못하므로 물러가 고례(古例)를 살펴보았으나 실로 명백하게 증명할 만한 전례가 없고 변례(變禮)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²⁴

전교: 일이 있으면 고하는 것은 예(禮)에 있어서 당연한 것인데, 하물며 이처럼 막중한 예에 있어서이겠는가. 즉시 날을 잡아 거행하라.²⁵

예조에서는 정호 후 고묘에 대해서 전례가 없는 변례이므로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처리할 것을 아뢰었다. 숙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예조에서 고묘에 대해 다시 대신들에게 논의하여 처리하도록 아뢰자 ‘일이 있으면 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원론적인 이유를 대고 즉시 날을 잡아 거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5월 8일 고유할 길일을 정하고²⁶ 5월 13일 희빈 장씨의 위호를 비(妃)로 정하여 종묘, 사직, 효사전에 고하였다.²⁷

한편 반교는 권대운의 제안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권대운은 앞서 내린 숙종의 전지(傳旨) 아래에 ‘중외에 포고한다[布告中外].’는 뜻을 첨입하여 팔도에 유시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알리고, 책례 때의 반교와 중첨을 피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숙종은 이를 취하여 처음 내린 비지(批旨) 가운데 ‘또한 승정원으로 하여금 중외에 포고한다[亦令政院布告中外].’고 여덟 글자를 덧붙여 써서 내렸다. 그리고 숙종은 당일 정사를 열어서 왕비의 부모에게 봉작하고 증직할 것을 명하였다.

24 『승정원일기』 335책, 숙종 15년 5월 8일(계묘). “定號之後，祇告太廟，實不可已，闕而不行，等待三年冊禮之日，誠爲未安，退考古例，實無明白可證之典，而事係變禮，議大臣處之，何如。”

25 『승정원일기』 335책, 숙종 15년 5월 8일(계묘). “傳曰，有事則告，禮卽然，況此莫重之禮乎，趁卽卜日舉行。”

26 『승정원일기』 335책, 숙종 15년 5월 8일(계묘).

27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5월 13일(무신).

이처럼 숙종은 정호 후 고묘, 반교라는 변례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행해 냄으로써 책례 전의 희빈 장씨가 궐내에서 진상이라는 물질적 측면의 보장을 받는 지위일 뿐만 아니라 종묘에 아뢰고 백성들에게 공표된 지위에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었다.

4. 청나라에 고명(誥命) 주청(奏請)

숙종은 희빈 장씨를 왕비로 삼겠다는 전지를 내린 지 3일 후인 숙종 15년 5월 9일 청나라 사은사(謝恩使)의 행차에 폐비의 일을 주청하고, 또 다른 사신을 보내어 왕비를 정한 것을 주청하여 고명(誥命)과 관복(冠服)을 청하도록 하였다.²⁸ 5월 13일에는 주청정사(奏請正使)를 동평군(東平君) 이항(李杭)으로 정했다. 본래 주청정사는 영의정 권대운이었는데, 권대운이 늙고 병들었다는 핑계로 종신(宗臣)이 대신할 것을 아뢰었다. 숙종이 이를 바로 허락하였다는 사실과 또 당시 사신의 평에 숙종이 여기에 뜻을 두었다는 것으로 볼 때, 동평군 이항이 주청정사가 되었던 것은 숙종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⁹ 더구나 희빈 장씨가 궁녀로 들어갈 때 동평군 이항이 주선하였고, 장씨가 명성왕후에게 쫓겨났을 때에도 동평군의 어머니에게 보살핌을 받았던 만큼 희빈 장씨를 위해서 고명을 받는 일에 가장 적극적이고 혼신적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항이었다.

동평군 이항은 사은사를 겸하여 주청하는 일을 맡았다.³⁰ 7월에 준비를 마치고 8월 11일 사은겸진주주청사(謝恩兼陳奏奏請使) 동평군 이항·부사(副

28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5월 9일(갑진).

29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5월 13일(무신).

30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5월 15일(경술);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7월 3일(정유);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7월 5일(기해).

使) 신후재(申厚載)·서장관(書狀官) 권지(權持)는 숙종을 인견하고 출발하였다. 폐비(廢妃)와 입비(立妃) 주문은 영의정 권대운 등이 의논하여 작성하였는데, 폐비의 이유는 선왕(先王)과 선비(先妃)를 범하였다는 것이었고, 입비의 이유는 덕이 후궁 가운데 으뜸이 되고, 또 아들을 낳았으므로 어머니는 아들로써 귀해지므로 예(禮)가 왕비의 지위에 오르기에 합당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인현왕후의 폐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청나라로부터 이어진다면 그 뜻이 선왕과 선비가 내리지 않은 하교를 가탁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³¹

8월 19일 이항은 청나라에 왕비를 교체하여 책봉하는 주청을 올렸다.³² 청 황제는 희빈 장씨를 왕비로 책봉하는 것을 특별히 윤허하였다.³³ 다만 주문(奏文)의 내용 중 ‘후궁(後宮)’이라는 두 글자를 제후(諸侯)가 쓰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시 되었다. 이를 사전에 조선 조정에 알렸는데, 조정에서는 이에 대해 천자(天子)와 제후의 빈어(嬪御)는 모두 후궁으로 일컬으므로 예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은 정리하였다.³⁴ 숙종 16년(1690) 1월 21일 청사(淸使)가 입경(入京)하여 숙종은 서교(西郊)에 나가 맞이하였다. 청사가 대궐에 가서 장씨 고명을 내린 후³⁵, 팔방에 교서(敎書)를 반포하고 사유(赦宥)하였다.³⁶ 영의정 권대운 등은 백관을 거느리고 청사에게 글을 바쳐, 주청사가 갔을 때에 주문 가운데에서 잘못된 부분은 임금의 탓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이므로 황제에게 돌아가 아뢰어 달라고 청하였다. 주청을 위해 청나라에 다녀온 주청정사 이항·부사 참판 신후재·서장관

31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8월 11일(갑술).

32 『동문휘고』 권1, 封典 1, 已巳 陳壇殿遜位奏 請改封王妃奏.

33 『동문휘고』 권1, 封典 1, 已巳 陳壇殿遜位奏 頒誥命綵幣勅.

34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12월 19일(신사).

35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1월 21일(계축).

36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1월 22일(갑인).

권지 등에게는 모두 가자(加資)하고 전토와 노비를 내렸고, 원역(員役) 이하에게는 가자하고 차등을 두어 물건을 하사하였다.³⁷

숙종은 희빈 장씨를 비(妃)로 정호하고 종신(宗臣)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평군에게 고명을 받아오는 임무를 맡겨 성공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왕비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5. 책례도감의 설치와 준비사항³⁸

그 후 6월 24일 책례도감을 설치하여 희빈 장씨의 책례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도감에서는 각 업무를 담당할 인원 명단이 당일 작성되었다. 4일 후 장악원에서 도제조 이하가 회동하였고, 원역(員役)이 차출되었으며 낭청과 감조관을 각 방으로 나누어 일을 분장하였다. 그리고 책례의 길일은 숙종 16년 10월 22일 오시(午時)로 정해졌다.

7월부터 10월까지 도감에서 책례를 위해 주고받은 문서의 내용을 통해 달별로 준비한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7월에는 전례를 참고하여 책례할 때의 제구를 확인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할 품목들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중궁의 수식에 대해서 논의하고 보식(寶式)을 확인하며, 금보(金寶), 교명(敎命), 전문(篆文)을 봉입하는 등의 일이 진행되었다.

8월에는 중궁전 책례 시 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절목을 마련하고 책례할 때의 의주(儀注)를 내입하였으며 국왕의 명을 대신할 정사와 부사를 선정하였다. 또 옥책문(玉冊文)과 교명문(敎命文)의 초도서(草圖書)를 봉진하였으며 책례 예행연습 장소를 결정하였다.

37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1월 23일(을묘).

38 『禧嬪中宮殿冊禮都監儀軌』.

9월에는 도감 각 방의 역(役)이 마무리 되었고, 책례를 위한 정사와 부사, 의녀들의 예행연습이 이루어졌다.

10월 책례일이 다가오자 책례를 위한 물품을 내입하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최종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명복(命服), 옥책, 금보 등 의물을 내입하고 이를 담을 함과 보자기 등을 비롯한 각종 제구를 갖추었고 여연(輶輶)을 배진하는 연습이 이루어졌다. 또 ‘발책(發冊)’을 위한 외습의(外習儀)가 10월 11일, 13일 의정부와 16일 인정전에서 거행되었다. 수책(受冊)을 위한 내습의(內習儀)는 10월 15일, 17일, 19일에 회정당에서 진행되었다. 교명, 옥책, 금보는 도감에서 궐정(闕庭)으로 책례일 하루 전인 21일까지 배진하도록 하였고, 교명은 안보(安寶) 후 내별전에 봉안해 두고 예조당상과 낭청 각 1원이 조복을 입고 22일 진배하도록 하였다.

III. 희빈 장씨의 책비 의절과 그 특징

1. 희빈 장씨의 왕비 책례 의주 구성

지금까지 희빈 장씨의 왕비 정호와 책례도감 설치 및 준비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숙종이 주도한 희빈 장씨 책례 절차가 다른 왕비의 책례 절차와 비교해 볼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의주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책비의 전형인 『국조오례의』 책비 예문과 인경왕후의 책비 의주를 비교하여 살펴보겠다.³⁹

³⁹ 이하 표에서 ‘인경왕후’는 『仁敬王后冊禮都監儀軌』의 의주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희빈중궁’은 『禧嬪中宮殿冊禮都監儀軌』의 의주 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표1-책비 의주 기입 순서 비교

국조오례의 의주를 기준으로 한 구분		국조 오례의	인경 왕후	희빈 중궁
의주	내용	의주 기입 순서		
발책	⑦참여자들의 자리 설치 및 의물과 의장물의 배치→종친문무백관, 사자, 국왕의 대기→종친문무백관의 입장→국왕의 입장→사자의 입장→선교(宣敎), 의물과 책을 사자에게 전달→사자의 퇴장→국왕의 퇴장→종친문무백관의 퇴장	1	1	2
	⑧사자의 왕비수책행례 표시	-	2	3
수책	⑨왕비전 문 밖에 의물, 책 진열을 위한 포막 설치→사자가 가지고 온 의물, 책을 포막에 진열→참여자 대기→사자가 상전에게 의물과 책을 전달→내명부의 입장 및 외명부의 문외위 대기→왕비의 수책(受冊)→내명부 배례, 치사 후 퇴장→외명부 입장 후 배례, 치사 후 퇴장→종친문무백관 궁문 밖 진하 치사	2	5	1
	⑩사자 정전으로 이동하여 국왕에게 복명(復命)	3	3	4
	⑪왕비 사전(謝箋)을 국왕이 있는 정전에 전달하고 상전이 왕비전으로 돌아와 복명	4	4	5

『국조오례의』 책비는 ‘발책(發冊)⁴⁰, 비]수책(妃受冊), 백관조하(百官朝賀), 회백관(會百官), 왕비회명부(王妃會命婦) 등으로 구성된다. 그 중 희빈 장씨의 책례는 전례에 따라서 왕비 책례 후 국왕의 회백관과 왕비의 회명부 의례에 대해서는 권정(權停)하였다. 의궤에 의주로 정리된 것은 ‘발책’과 ‘수책’ 부분으로 이 부분을 『국조오례의』 의주, 인경왕후 의주와 비교해 보면 표1과 같이 의주가 구성되었다.

40 『국조오례의』에는 정전에서 국왕이 사자에게 교명, 책, 의물을 전달하도록 명령하는 의주를 ‘發冊’이라는 항목으로 별도 기입하지 않았으나 필자는 이러한 의식을 발책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전에서 거행되는 행례를 왕비전에서 거행되는 행례인 受冊(수책)은 기록되어 있다)와 구분하여 사용할 용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당개원례』에서는 이를 ‘임현명사’라고 하였고, 『대명집례』에서는 ‘발책’이라고 하였으며, 『고려사』에서는 ‘임현발책’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참조하여 ‘발책’이라고 하였다.

『국조오례의』 책비 의주에 의하면 국왕이 왕비를 임명하는 교명과 의물, 책을 사자를 통해 전달하는 ‘발책’이 행해진다. 여좌 및 참여자들의 자리 설치 및 의물과 의장물의 배치→종친문무백관, 사자와 국왕의 대기→종친 문무백관의 입장→국왕의 입장→사자의 입장→선교(宣敎), 의물과 책을 사자에게 전달→사자의 퇴장→국왕의 퇴장→종친문무백관의 퇴장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왕비가 국왕이 전달한 교명, 의물, 책을 전달받는 수책이 행해졌다. 왕비전 문 밖에 의물과 책 진열을 위한 포막 설치→의물과 책을 포막에 진열→참여자 대기→사자가 상전에게 의물과 책을 전달→내명부의 왕비전 입장 및 외명부의 문외위 대기→왕비의 수책(受冊)→내명부 배례, 치사 후 퇴장→외명부 입장 후 배례, 치사 후 퇴장→종친문무백관 궁문 밖 진하 치사→왕비 사전(謝箋) 의식→사자 정전으로 이동하여 복명→사전을 국왕이 있는 정전에 전달하고 왕비전으로 돌아와 복명(復命)하는 순서였다. 이는 정전과 왕비전 등 행례의 공간을 이원적으로 분류하고 그 내부에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의주를 수록한 것이다.

이러한 『국조오례의』 의주의 기록에 ④의 내용이 인경왕후 책비에 ‘첨입’되었다. “사자 이하는 왕비전문 밖에 이르러서 교명함, 책함, 보수, 명복함을 가지고서 상전에게 전해서 내입한다. 왕비수책의 행례는 의식과 같다.”⁴¹는 내용으로 정전에서 국왕의 명을 받은 사자가 이후 행할 행례를 간략히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국조오례의』에서는 수책의주에 기록되어 있던 의주 ④ 사자의 복명(復命)이 발책으로 재배치되었다. 국왕의 명을 받은 사자에 대한 첨입 내용과 수책에 있던 사자의 내용이 모두 ‘발책’ 의주로 재배치 된 것이다.

④ 왕비의 사전(謝箋)에 대한 내용도 수책에서 발책 부분으로 재배치되었

41 『국조오례의』 嘉禮, 冊妃. “使者以下, 至王妃殿門外, 以敎命冊函寶綬及命服函, 傳授尙傳以入. 王妃受冊行禮如儀.”

다. 이는 희정당에서 왕비의 사전을 받은 상전이 인정전의 전교관에게 전달한 후 돌아와 왕비에게 복명하는 의식으로, 상전의 이동 공간으로 본다면 상전이 희정당으로 돌아오므로 『국조오례의』와 같이 수책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발책 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상전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행례의 내용 즉 세장고취(細仗鼓吹)에 의해서 인도되는 전함(箋函)의 공간이 희정당에서 인정전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국왕의 발책과 좀 더 연관성이 있다고 인식한 것은 아닐까 추정된다.

희빈 장씨의 책비도 인정왕후 책비와 이상과 같은 첨입과 재배치가 확인된다. 즉, 사자의 행례와 복명, 왕비 전함(箋函)을 전달하는 의주가 모두 ‘발책’ 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희빈의 책비 의주는 수책 의주가 발책보다 앞서 먼저 배치되었다. 국왕이 사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행위가 있어야만 희빈이 책봉을 받는 행위가 가능한 만큼 발책 후 수책이 매우 자연스러운 의주 배치가 된다. 그렇지만 희빈 장씨의 책비 의주는 수책이 먼저 기록되었다. 그 이유는 제한적이지만 같은 해 거행된 세자의 책례와 연관하여 그 실마리를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희빈 장씨의 아들인 원자는 태어난 지 3년이 지난 숙종 16년 6월 16일 책례를 거행하였다. 당시 어린 세자의 수책 의식을 위해서 숙종은 왕세자 수책의주를 도로 내려 주어 부효하기도 하는 등 직접 수책의주에 관심을 가지고 책례를 준비하였다.⁴² 희빈 장씨의 책례도 그동안 없었던 변례에 해당하였다. 더구나 숙종이 참여할 수 없는 공간에서 행례가 거행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희빈 장씨의 수책 의주를 가장 먼저 배치하였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즉, 희빈 장씨의 책비 의주는 국왕이 명을 내리고 왕비가 받는 형태의

42 『승정원일기』 341책, 숙종 16년 6월 5일(갑자).

의주 배치가 아니라 그 반대인 수책 후 발책으로 의주를 정리하였다. 수책을 앞에 두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방식으로 후궁의 책비라는 변례를 잘 진행하기 위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국조오례의』에 없던 의주의 내용이 첨입되고, 『국조오례의』에서 수책 의주에 부기되었던 사자의 복명 의주와 전함을 전달하는 의식 등이 발책 의주로 재편됨으로써 책례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인정전에서의 발책으로 수렴되게 의주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

2. 희빈 장씨 책비의 특징

1) 『국조오례의』와 전례(前例)를 참고한 상세한 의주의 작성

희빈 장씨의 책비 의주는 이상과 같이 수책의주, 발책의주 순서로 정리되었다. 그렇다면 희빈 장씨의 책비 의주 내용은 전례(前例)였던 인경왕후 책비와 배치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수책, 발책의 세부 예문 내용은 동일하였던 것일까? 책비의 전형인 『국조오례의』의 내용과 인경왕후 책비의 수책과 발책 의주 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국조오례의』 의주, 인경왕후 수책 의주, 희빈 장씨 수책 의주의 예문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첫째, 『국조오례의』보다 상세하게 예문을 기록하였다(A). 인정전에서 발책이 진행되는 동안 희정당에서도 사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명부(命婦)가 대기하였다. 그리고 사자가 왕비전(王妃殿) 문 밖에 당도할 즈음에 왕비에게도 그 사실이 전달되었다. 희빈 장씨의 수책 의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사자가 교명함, 책함, 보수를 어떻게, 무슨 순서로 실어오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자를 맞이하는 자와 교명함·책함·보수를 받들어 진열하는 집사를 구별하여 기록해 둠으로써 의물 간의 위계와 담당자를

표2-수책 의주 비교

국조오례의 의주 내용		인경 왕후	희빈 장씨
준비	•1일전, 당일 의물, 책 보관 장소 설치 •당일 자리, 안(案) 설치	좌동	좌동
迎使者	•외명부의 대기 •왕비에게 중엄을 아름	좌동	좌동
	•사자를 맞이함	『오례의』 同	상세히 기록Ⓐ
備物典冊전달	•사자가 교명함, 책함, 보수를 상전에게 전달	상세 기록	『인경』 同Ⓒ
입장/대기	•내명부가 전정의 배열위로 입장 •외명부는 문외위 대기	좌동	좌동
妃受冊	•尙宮, 尚服, 尚寢이 교명함, 책함, 實緩, 의장을 취하여 진열 •왕비 배례, 상궁이 힘을 열어 책명을 선포. 왕비 수책 후 배례 •정전에 王妃座, 교명안, 책안, 보안을 설치하고 정전 밖에 향 안을 설치하고 왕비가 왕비좌에 오름 •의장을 전정 동서에 배치	좌동	좌동
內命婦 拜禮, 致詞	•내명부 배례, 치사, 배례	치사내용 변경	『인경』 同Ⓓ
外命婦 拜禮, 致詞	•외명부 배례	간략	『오례의』 同Ⓑ
	•외명부 치사	치사내용 변경	『인경』 同Ⓓ
宗親文武百官 陳賀, 致詞	•종친문무백관 진하 치사	조복 상세	『인경』 同Ⓒ

분명하게 해 두었다.⁴³

둘째, 인경왕후 수책 예문이 간략할 경우 『국조오례의』의 예문을 수록하였다(Ⓑ). 왕비가 수책한 후에는 내명부와 외명부 순서로 배례와 치사를 하였다. 그런데 인경왕후 수책에서는 외명부의 배례부터 치사 전까지의

43

국조오례의	使者, 至宮門外, 掌次者, 迎入次。敎命冊函寶綬, 陳於幕內(其命服, 使者授尚傳, 先進。)
인경왕후	使者, 至宮門外, 掌次者, 迎入次。敎命冊函寶綬, 陳於幕內(其命服, 使者授尚傳, 先進。)
희빈 장씨	使者, 捧敎命冊函寶綬及命服函, 各置於絲輿, 次輦及儀仗前行, 使者隨行, 至王妃殿門外, 掌次者, 迎使者入次, 執事, 捧敎命冊函寶綬, 陳於幕內(其命服, 使者授尚傳, 先進。)

동작에 대해서 “전찬이 사배를 외치면 외명부는 모두 무릎을 끓는다.”고 간략히 기록하였다. 보통 전찬이 사배를 외치면 외명부는 사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지나치게 의주를 간략화해서 배례의 시작과 치사직전의 행례만을 기록한 것이었다. 희빈 장씨 수책 의주에서는 이 의주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국조오례의』 수책의주를 사용하였다. 집사자들과 외명부의 행례를 상세하게 기입함으로써 행례를 염격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⁴⁴

셋째, 인경왕후의 수책 의주를 따랐다(◎). 사자가 상전에게 의물을 전달하는 의식에서는 이 둘의 행례가 중심이었으므로 의물을 전달하는 상을 든 자와 부사는 물러 나와야 한다. 인경왕후 수책 의주에서는 의물을 전달하는 부사의 행례가 『국조오례의』보다 분명하게 기입되었다. 희빈 장씨 수책 의주에서는 이러한 인경왕후 수책 의주의 내용을 의주로 수록하였다.⁴⁵ 이 외에도 행례가 끝나고 희빈 장씨가 돌아갈 때와 관련하여 ‘시위는 평소 의식과 같이 한다[侍衛如常儀]’고 기록한 것과 종친문무백관의 복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인경왕후 수책의주를 그대로 썼다.

넷째, 당시 실제 참여자들을 반영하여 의주를 작성하였다(⑩). 수책 후 내명부와 외명부는 배례 후 치사(致詞)를 올렸는데 희빈 장씨의 수책에서는

44

국조오례의	又典賓，引外命婦，入就位。典贊唱，四拜，外命婦四拜。典言，陞自西階，進當座前，俯伏跪，典贊唱，跪，外命婦，皆跪。
인경왕후	又典賓，引外命婦，入就位。典贊唱，四拜，外命婦皆跪，
희빈장씨	又典賓，引外命婦，入就位。典贊唱，四拜。外命婦四拜，典言陞自西階，進當座前，俯伏跪，典贊唱，跪，外命婦，皆跪，

45

국조오례의	擧敎命·冊·寶案者，以次進副使前，副使，取敎命·冊函·寶綏舉案者，皆退。進授正使，訖，退復位。
인경왕후	擧敎命冊寶案者，以次進副使前，副使，取敎命冊函寶綏舉案者，皆退。進授正使，正使受之，副使退復位。
희빈장씨	擧敎命冊寶案者，以次進副使前，副使，取敎命冊函寶綏舉案者，皆退。進授正使，正使受之，副使退復位。

내명부의 치사가 “첩 모씨 등은 삼가 왕비전하의 덕이 밝고 두터워서 중궁에 정위하시니 모든 신첩은 경사로운 일에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고, 외명부 치사는 “첩 모 공주 등은 삼가 왕비전하의 덕이 밝고 두터워 중궁에 정위하시니 모든 신첩들은 경사로운 일에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⁴⁶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치사를 올릴 때 반수(班首)가 내명부에서는 빈(嬪)이거나 외명부에서는 왕녀인 공주일 경우에만 ‘전하’라고 하였으므로 ‘왕비전하’라고 한 것은 반수로 빈이나 공주가 없었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한편, 발책 의주를 비교해 보면 표3과 같은 차이가 확인된다. 첫째, 인경왕후 발책 의주를 따랐다. 평상시와 같은 방식으로 설치되는 현현과 협률랑의 자리, 협률랑이 깃발을 흔드는 것 등을 생략한 인경왕후 발책 의주가 희빈 장씨 의주에서도 사용되었다⑩. 또 『국조오례의』 발책에는 없는 내용도 활용되었는데, 국왕이 입장이나 퇴장하기 전에 홀을 잡고 놓는 내용이나 전교관은 승지이고 종친문무백관은 인의의 인도를 받는 등의 내용은 인경왕후 의주에 더 자세히 기록된 것이었으므로 희빈 장씨의 책비 의주에서도 이것으로 기록하였다⑪).

둘째, 인경왕후 발책 예문이 간략할 경우 『국조오례의』의 예문을 수록하였다. 인경왕후의 발책 의주는 표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상(如常)’이라고 하여 행례는 하지만 의주에는 자세히 기입하지 않았다. 또는 의주의 내용은 기록하였지만 축약한 것도 많았다. 이러한 내용은 종친문무백관의

내	국조오례의	典言, 代致詞云, 嫣某氏等, 敬惟殿下, 德昭厚載, 正位宮壇, 凡厥臣妾, 不勝慶忭。
명	인경왕후	典言, 代致詞云, 妾某氏等, 敬惟王妃殿下, 德昭厚載, 正位宮壇, 凡厥臣妾, 不勝慶忭。
부	희빈 장씨	典言, 代致詞云, 妾某氏等, 敬惟王妃殿下, 德昭厚載, 正位宮壇, 凡厥臣妾, 不勝慶忭。
외	국조오례의	典言, 代致詞云, 妾某公主等, 敬惟殿下, 德昭厚載, 正位宮壇, 凡厥臣妾, 不勝慶忭。
명	인경왕후	典言, 代致詞云, 妾某公主等, 敬惟王妃殿下, 德昭厚載, 正位宮壇, 凡厥臣妾, 不勝慶忭。
부	희빈 장씨	典言, 代致詞云, 妾某公主等, 敬惟王妃殿下, 德昭厚載, 正位宮壇, 凡厥臣妾, 不勝慶忭。

자리, 집사자의 자리, 노부반장의 자리, 군사배열, 인정전에서 국왕의 시위, 찬의와 전의의 역할, 찬의와 사자의 행례 등이었다. 희빈 장씨의 발책 의주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조오례의』 예문을 회복하여 의주로 기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정왕후 발책 의주는 약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표3-발책 의주 비교

국조오례의 의주 내용		인경왕후	희빈장씨
준비	•1일전 御座, 국왕의 寶案, 敎命案, 冊案, 寶案, 命服案 설치	좌동	좌동
	•현현, 협률랑위 설치	如常 표시	『인경』 同④
자리 설치	•당일 殿庭에 문관위, 무관위, 종친위 설치, 대군위 규정	如常 표시	『오례의』 同 대군위 無○
	•殿庭에 전의위, 통례위, 찬의위, 인의위 설치	如常 표시	『오례의』 同
	•殿庭에 使者受命位 설치	좌동	좌동
	•門外에 문관위, 무관위, 종친위, 사자위 설치	간략	『오례의』 同
의장 진열	•초엄, 殿庭에 龍簿半仗 진열	正階 생략	『오례의』 同
	•門内外에 군사배열	無	『오례의』 同
	•殿庭에 輿, 輦, 御馬, 仗馬 진열	간략, 仗馬 생략	『오례의』 적용
	•門外에서 彩輿 진열 禮曹正郎 담당	兵曹 담당	『오례의』 적용
입장	•이엄에 편전에서 집사자 준비	司禁, 尚瑞院官 생략	『오례의』 同
	•중엄에 典樂, 協律郎 자리에 나감	無	『인경』 同④
	•삼엄에 종친문무백관 자리에 나감	좌동	좌동
	•鍾聲止, 국왕 입장 준비	鼓聲止, 협률랑 생략, 국왕 執圭 추가	『인경』 同④⑥
宣敎 備物 典冊전달	•殿內 侍衛 배치	생략	『오례의』 同
	•배례 시 賛儀와 典儀의 역할	생략	『오례의』 同
	•전교관	승지 기재	『인경』 同⑥
	•전교관 선교(宣敎)	간략	『오례의』 同
使者 出門	•사자 퇴장 후 종친문무백관 배례	引儀의 인도 기재	『인경』 同⑥
	•국왕 퇴장 시 협률랑 기록	협률랑 생략 국왕 釋圭 기재,	
	•국왕의 환어 장소 사정전	환어 장소 내전	『인경』 同④⑥

데, 노부 반장을 진열하는 공간 가운데 정계(正階)가 빠져 있었고, 군의 배열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정에 장마(仗馬)를 진열하는 것도 생략되었다. 또 국왕이 인정전에 입장하기 전 대기 할 때의 집사자 가운데 사금(司禁)과 상서원관(尙瑞院官)도 생략되었다. 희빈 장씨 책례에서는 생략된 내용을 모두 『국조오례의』의 발책 의주로 회복하여 기록하였다.

셋째, 당시 실제 참여자들을 반영하여 발책 의주를 작성하였다. 행례 당일 종친문무백관의 자리 마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조오례의』를 따르면서도 그 실제를 반영하여 대군의 특설위는 정 1품 앞에 설치한다는 의주를 생략하였다.⁴⁷

이처럼 희빈 장씨의 수책·발책 의식은 당시 실제를 반영하고 있었으며, 『국조오례의』의 내용이 자세하지 않을 경우 더 상세하게 정리하였고, 전례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국조오례의』의 의주를 수록하였으며, 전례가 『국조오례의』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경우 전례를 의주로 기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국조오례의』의 의주에 충실하면서도 보다 더 자세한 의절을 수록한 책비 의주가 마련되었다.

2) 책비 전례(前例)를 활용한 의례의 실천

희빈 장씨가 책비를 거행하기 전에 왕실에서는 표4와 같은 책비 사례가 있었다. ‘흔례 과정의 일부로 책비를 하는 경우(②, ④, ⑥)’와 ‘선왕이 흥서하고 성복(成服) 전에 위호를 정하고 부묘례(附廟禮) 뒤에 왕이 즉위하여 세자빈을 왕비로 승위하기 위해서 책비하는 경우(①, ③, ⑤)’ 등이었다. 희빈

47

국조오례의	其日，典儀，設文官一品以下位於殿庭道東，宗親及武官一品以下位於道西，俱每等異位，重行北向，相對爲首。宗親，每品班頭，別設位，大君，特設位於正一品之前。
인경왕후	其日，典儀，設宗親文武百官位於殿庭東西，如常。
희빈장씨	其日，典儀，設文官一品以下位於殿庭道東，宗親及武官一品以下位於道西，俱每等異位，重行北向，相對爲首。宗親，每品班頭，別設位。

장씨(⑧)의 책비는 이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변례였다.⁴⁸ 따라서 여러 전례를 참고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책비 전례(①, ③, ⑤)를 주로 참고하였다.

표4-효종-숙종 대 책비 공간

구분	冊妃(冊嬪) 구분	발책(冊妃)	수책(受冊)
인선왕후 장씨	①冊 妃: 효종2년(1651)	-	-
명성왕후 김씨	②納嬪(冊嬪): 효종2년(1651)	-	어의동궁
	③冊 妃: 현종2년(1661)	승정전	홍정당
인경왕후 김씨	④納嬪(冊嬪): 현종2년(1661)	인정전	어의동궁
	⑤冊 妃: 숙종2년(1676)	인정전	희정당
인현왕후 민씨	⑥納妃(冊妃): 숙종7년(1681)	인정전	어의동궁
	⑦廢位 후(冊妃): 숙종20년(1694)	인정전	희정당
희빈 장씨	⑧冊 妃: 숙종16년(1690)	인정전	희정당
인원왕후 김씨	⑨納妃(冊妃): 숙종28년(1702)	승정전	어의동궁

우선, 희빈 장씨의 책비의는 10월 22일 창덕궁의 인정전과 희정당에서 거행되었다. 현종 2년에는 정전(正殿)인 승정전에서 발책이, 편전(便殿)인 홍정당에서 수책이 거행되었고, 숙종 7년(1681)에는 정전 인정전과 편전인 희정당에서 책봉 의례를 행하였다. 숙종 대에는 인경왕후, 희빈 장씨, 인현 왕후 모두 책비를 정전인 인정전과 편전인 희정당에서 거행하였다. 희빈 장씨도 전례를 따라 당시 궁궐의 정전과 편전에서 책비를 거행하였다. 둘째, 예행연습도 전례를 참고하였다. 책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습의 곧 예행연습을 하는데 당시 참여 여관들은 숙종 2년 인경왕후 책례를 참고하여 예행연습을 하였다.

48 인현황후의 책비(⑦)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폐위 후 책비라는 변례에 속한다. 이는 또 다른 정치적 함의가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본고는 희빈 장씨의 책례 의절과 그 함의에 집중하기 위해서 『국조오례의』 책비와 인경왕후의 책비 의주(⑤)에 주목하였다.

셋째, 책례 때에 악장을 짓지 않았다. 중궁전 악장은 현종 2년 책례 때에 대신들이 악장을 짓지 않는 것으로 의논하여 그 후 책례에는 악장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례에 따라 희빈 장씨의 책례에서도 악장을 짓지 않았다.

넷째, 수책 이후의 내외명부진하, 전하회백관, 회명부 의절도 전례를 따랐다. 왕비 책례 후 전하회백관과 회명부도 효종 2년, 현종 2년, 숙종 2년 책례 때에 모두 권정(權停)하였으므로 희빈 장씨의 책례에서도 권정하였다. 그리고 내외명부 진하는 대상을 축소했다. 효종 2년 책례 때에 내외명부 진하 의절은 당초에는 마련하도록 하였지만 전교로 외명부 대전유모, 왕비모, 공주, 옹주, 대군, 왕자 부인 이외의 외종친 및 조사대부명부(朝土大夫命婦)는 입참하지 않도록 한 것이 출발이 되어 그 후 현종 2년과 숙종 2년 책례에서도 전례를 따랐다.

3) 책비 제구(諸具) 조정

이렇게 책비 전례를 참고하여 책례를 준비하는 한편 왕비의 교명축과 왕비 의대와 관련한 제구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첫째, 교명축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낭청을 보내어 봉심하도록 하였다. 교명축은 오색직사를 이용해서 상의원에서 직문하고 도감에서 회장을 담당하였다. 교명축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제작하였는데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상승하고 하강하는 용을 넣었다. 그런데 직문 중 ‘용조(龍爪)’는 그 가감(加減)을 살피고 ‘교문(敎文)’은 글자의 ‘대소(大小)’를 잘 살피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미 보관하고 있는 교문문을 꺼내어 도감 낭청이 직접 가서 그 체제를 봉심한 후 직조하도록 하였다. 용의 발톱 개수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며, 상승하고 하강하는 용 사이에 쓰는 교문이라는 글씨의 대소도 그 지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었다. 숙종은 낭청을 보내어 이를

봉심하게 하여 다른 왕비와 비교할 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현재 장씨의 교명축이 남아 있지 않아 실제 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장렬왕후의 교명문 체제를 봉심하였으므로 용의 발톱 개수는 5개로 직조하였을 것이며 교문이라는 글자의 크기도 그에 준해서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의대 제구 가운데 머리장식인 수식(首飾)의 제작에 있어서도 고려한 흔적이 보인다. 책례시 머리장식은 체발(髢髮)과 흑각잠(黑角簪)으로 하였는데 전례를 참고하여 조정하였다. 효종 2년, 현종 2년, 숙종 2년 책례 때에는 체발을 모두 40단으로 하였다. 숙종 2년 책례시 흑각잠은 대, 중, 소 모두 50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숙종 7년 인현왕후 가례 때에는 체발 20단과 흑각잠 대, 중, 소 모두 27개를 제작하였다. 장씨의 책례에는 체발 20단과 흑각잠 27개를 제작하였는데 그 체발의 크기가 컼던 것으로 보인다. 그 크기는 체발에 들어가는 진유(眞油)의 양을 감조관이 수모(首母)에게 물었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책례시에 체발 40단에 들어가는 5승(升)의 진유(眞油)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20단이므로 2승 5합(合)을 해당 방에 주었는데 이것이 부족하였다. 이에 수모들은 이번 체발의 속수(束數)가 이전 책례 때의 것과 비교해 볼 때 크고 길어서 이전의 40단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흑각잠도 수모들에게 물어서 큰머리에 들어갈 1척 3촌의 잠 2개, 9촌 잠 2개, 8촌 잠 2개, 5촌 5분 잠 3개, 5촌 잠 6개, 5촌 5분 잠 3개 등 18개와 삼각형머리 부분에 쓸 1척 3촌 잠 2개, 6촌 잠 5개, 5촌 5분 잠 2개 등 9개 도합 27개를 제작하였다. 책례와 가례의 체발을 참고하여 개수는 가례에 맞추면서도 그 크기는 전례의 책례에서 장식하였던 체발의 크기에 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왕비 책례와 관련된 제구는 다른 왕비의 제구와 차이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잘 봉심하도록 하여 갖추었다. 또한 희빈 장씨의 머리 장식은

책례와 가례의 전례를 적절히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IV. 왕가(王家)의 책비 의례에 담긴 정치적 함의

희빈 장씨의 책례는 의주를 자세히 기록하고 전례를 따르며 책례 제구에 왕비의 위용을 드러내어 의절을 잘 준수함으로써 국왕이 임명한 명부의 수장으로서 그 지위를 드러내는 절차로 구성되었다. 즉 책례 절차를 잘 준수함으로써 ‘정상적인’ 책례 의절의 상징적 의미를 그대로 희빈 장씨에게도 투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 일반적인 책례의 상징적 의미와 달리 그 속에 함축된 의미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 함의를 드러내기 위해 책례 의절과 연결된 의례와 책례도감의 구성원들을 살펴본 후, 책례를 전후한 숙종의 언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왕실 내에서 희빈 장씨의 책례가 어떤 의례와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희빈 장씨의 왕비 책례가 가지는 함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희빈 장씨를 왕비로 책봉하였다. 지난해에 이 명이 있었으나, 장렬왕후의 상제(祥祭)·담제(禫祭)를 지내지 않았으므로 책례를 치르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도감을 두어 거행하였다. [...] 교명문(敎命文)에 이르기를, “임금은 이르노라, 대궐에서 원자를 길러 세자를 책봉하는 예를 치르자, 중궁의 위호를 밝혀 왕비를 세우는 의례를 거행하니,……”⁴⁹

49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10월 22일(기묘).

일반적으로 왕비의 책례는 선왕이 사망한 이후 국상이 종결되어 국왕 신주를 부묘하고 만약 대비가 생존해 있다면 존승하는 의절을 거행한 후 새로운 왕후의 책례를 거행하는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점에서 부묘도감, 책례도감, 존승도감의 업무가 함께 정리되었다. 숙종 2년 인경왕후의 책례 때에도 부묘도감, 책례도감, 존승도감의 업무가 함께 기록되었다.⁵⁰ 또한 그 인적구성도 대체로 동일하며 도감의 처리업무는 다르지만 유사한 사안을 함께 담당하였다.⁵¹ 희빈 장씨의 책례는 전례에 따라 국상이 있으면 담제가 끝난 후에 책례를 지내므로 장렬왕후의 담제가 지난 후 도감을 설치하였다.

희빈 장씨의 책례와 더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은 세자 책례였다. 위 교명문의 내용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희빈 장씨의 왕비 책례는 원자를 세자로 책봉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또한 희빈 장씨의 책례 교명문에 따르면 “춘추(春秋)의 의미에서 상고할 것은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귀하여지는 것인데 마침 중궁 자리가 비었을 때에 존귀한 중전 자리에 합당하다.”고 하여 존귀한 아들로 인해 어머니 희빈 장씨도 귀해져야 한다는 이유가 밝혀져 있다.

실제 원자가 태어난 숙종 14년(1688) 10월 27일부터 희빈 장씨가 책례를 한 숙종 16년(1690) 10월 22일까지 아들이 존귀해지면 어머니 희빈 장씨도 존귀해지는 행로를 맑고 있었다. 숙종 15년 1월 15일 원자의 정호를 종묘, 사직에 고하고 소의 장씨도 희빈이 되었으며, 희빈 장씨를 왕비로 정하겠다는 전지를 내리고 종묘, 사직, 효사전에 고묘하였다. 원자의 책례는 원자가 3세의 나이였던 숙종 16년 4월에 거론되었다. 숙종이 대신과 비변사의

50 『仁敬王后冊禮都監儀軌』.

51 나영훈, 『조선시대 도감의 성립과 변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16), 204쪽

재신(宰臣)들을 인견하는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영의정 권대운과 좌의정 목내선이 동궁의 위호를 일찍 정하기를 청하였다. 당시 입시하였던 신하들은 모두 이를 찬성하여 책봉의 예를 거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세자의 책례는 장양(長養)의 뜻 때문에 가을, 겨울에 거행하지 않고 봄, 여름에 거행하는 것이었다. 이에 숙종은 6월 초에 거행하도록 하였다. 다만 당시 장렬왕후의 국상이었으므로 면복을 갖출 수 없었다. 민암은 이에 대해서 종묘를 이어받고 사직을 받드는 대계이므로 차길(借吉)할 것을 아뢰었다. 비록 『문현통고』·『두씨통전』 등에 의거할 만한 글은 없었지만 대신들의 의논으로 차길하기로 결정하였다.⁵² 4월 16일에는 원자의 이름을 정하고, 다음날 책례도감을 설치하였으며, 현종 8년(1667) 숙종 자신의 책례의 예에 따라 쌍동계(雙童髻)·공정책(空頂幘)·칠장복(七章服)으로 행례하도록 하였다.⁵³ 세자시강원의 관원을 차출하였고⁵⁴, 정사(正使)는 우의정 김덕원(金德遠), 부사(副使)는 예조판서 이관징(李觀徵)을 보내어 원자를 세자로 봉하였다.⁵⁵ 17일에는 세자의 책례가 끝나고 교서를 반포하였는데 그로부터 7일 뒤 희빈 장씨의 책례도감을 구성하여 책례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즉, 희빈 장씨의 책례는 원자를 세자로 정호하고서 중궁의 위호를 분명히 하기 위한 연장선에서 거행되었던 것이며, 이는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귀해질 수 있다는 『춘추』의 논리로 합리화되는 세자의 존귀함과 연결되는 의식이었다.

둘째, 책례도감의 인적구성을 통해 희빈 장씨의 책례가 가지는 함의를 파악할 수 있다. 숙종 16년 세자 책례도감의 구성원과 희빈 장씨 책례도감의 구성원은 대체로 많은 수의 인원이 중복된다. 물론 도감의 직제가 도제조와

52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4월 13일(갑술).

53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4월 19일(경진).

54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5월 14일(갑진).

55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6월 16일(을해).

제조는 당상관으로 하고 도청과 낭청은 참상관으로 하고 감조관과 분차관은 참하관으로 하는 일정한 차출 방식이 있었고 희빈 장씨의 책례도감 구성원들이 그 차출 방식에서 벗어난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⁵⁶, 규정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자 탄생 이후 설치된 장렬왕후국장도감의 구성원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책비에서 도제조였던 의정부 우의정 김덕원은 세자 책례 시 정사였고, 세자 책례 시 도제조였던 의정부 영의정 권대운은 희빈 장씨 책례 시 정사였다. 제조 의정부 좌참찬 이관징과 호조판서 오시복은 세자 책례 때에도 제조였다. 세자 책례시 제조였던 오정위는 희빈 장씨 책례 때에도 제조로 참여하다가 예조판서 이우정으로 대체되었다. 도제조와 제조에 있어서 양 책례의 성원이 동일하였다. 또 정랑 서래익, 좌랑 이고징 등이 양 책례에서 모두 낭청직을 담당하였다. 감조관은 민장도가 양 책례에 모두 참여하였다. 한편 세자책례에서 이관징은 제조이면서 부사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희빈 장씨의 책례에서는 민암이 부사이면서 옥책문 제술관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민암은 세자 책례에서 죽책문 제술관이었다. 또한 교명 제술관은 세자와 희빈 장씨의 책례 모두 유명천이었다. 이처럼 세자 책례와 희빈 장씨 책례를 담당하는 관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희빈 장씨 책례의 경우 도제조부터 감조관의 관원과 정사부터 옥책, 교명, 금보를 담당하는 관원 중 절반 이상이 세자 책례도감의 구성원과 일치하였다. 더구나 책례의 배경과 이유가 자세히 기록된 교명문과 책문 제술관이

⁵⁶ 『만기요람』에 따르면 도감 관원의 차출 방식 도제조(1), 시임, 원임 대신, 이조 계하, 제조(3) 호조, 예조, 공조 당상, 이조 단부 계하, 일이 호번할 때에는 정경, 아경 중 1인 차하, 참상 도청(2) 시임 옥당, 증경자, 낭청(4) 호조, 예조, 공조, 각사 낭청은 이조 단부하고 일이 호번할 때 1-2인 더 차하하고 궐원이 생기면 도감에서 차출, 참하 감조관(3) 참하 실직, 前銜, 도감 단후 계하하고 일이 호번하면 2-3인 더 차출하도록 하였다(나영훈(2016), 앞의 논문, 234쪽).

양 책례에서 동일하였다.

이러한 도감의 인물들은 숙종 6년 경신환국과 삼복사건으로 정계에서 밀렸던 남인과 숙종 8년 삼고변에 연루된 인물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숙종 15년 원자 정호 과정에서 서인을 대체한 남인들이었다.⁵⁷ 원자 정호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으며, 인현왕후 폐비에 있어서는 모(母) 와의 의리 및 국왕의 제가(齊家)라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목숨 걸 정도로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은 세자와 장희빈의 지위와 관련한 의례의 거행에 있어서 숙종의 뜻을 실행하는 보조자이자 원조자들이었으며 또 그들 사이의 관계망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일례로 권대운은 숙종이 희빈의 출신이 미천한 것을 어렵게 여기는 것을 알고 장현(張炫)에게 상을 내릴 것을 청하면서 대신의 은례(恩例)에 따르게 하였고, 또 장희재(張希載)를 무신의 극선(極選)인 무고(武庫)와 태복(太僕)의 자리에 올려 계속 제수하였다. 또 권대운 등이 모두 민암과 모의하였다 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장희재의 권세에 의지하여 부귀를 얻으려고 기대하고 있었다.⁵⁸ 민종도(閔宗道)도 ‘지금 임금께서 내전(內殿)을 폐출하려 하니, 신하들은 마땅히 예에 따라 논집해야 한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강력히 간쟁하여 기어이 절의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며 숙종의 뜻을 봉행하였다. 특히 그들의 관계망에 있어서 민암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민암의 딸은 오시수의 아들 오상유와

57 당시 책례도감의 주요 구성원은 탁남에 해당하는 인사들이 다수였다. 이수건과 고영진은 남인 구성원을 청남과 탁남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는데 그 구성원과 본 도감의 구성원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난다(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일조각, 1995), 407쪽 표; 고영진, 「17세기 후반 근기남인학자의 사상」, 『역사와 현실』13(1994), 164쪽).

58 『숙종실록』 권20, 숙종 15년 4월 26일(임진).

혼인하였는데 오시수(1632-1681)는 복평군 등 삼복 형제와 외사촌간이 되는 인물이었다. 민암의 형 민점의 딸은 김덕원의 아들 김몽양을 사위로 맞았다. 민점의 형 민희의 아들 민창도는 이관징의 딸과 혼인하였다.

또 다른 연결고리는 도감의 구성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세자시강원의 관속이었다. 권대운은 겸세자사(兼世子師), 목내선은 겸세자부(兼世子傅), 민암·이관징은 겸좌빈객(兼左賓客)·겸우빈객(兼右賓客), 민종도(閔宗道)·이 담명(李聃命)은 겸좌부빈객(兼左副賓客)·겸우부빈객(兼右副賓客), 이현일(李玄逸)은 겸찬선(兼贊善), 정시한(丁時翰)은 진선(進善), 이인징(李麟徵)은 보덕(輔德), 심벌(沈撥)은 겸보덕(兼輔德), 권기(權情)는 약선(弼善), 김주(金澍)는 겸필선(兼弼善), 류재(柳栽)는 문학(文學), 이현조(李玄祚)는 겸문학(兼文學), 홍돈(洪墩)은 사서(司書), 민창도(閔昌道)는 겸사서(兼司書), 이우겸(李宇謙)은 설서(說書), 박정(朴挺)은 겸설서(兼說書)로 세자시강원의 관원이었다.⁵⁹ 또한 다른 왕비 책례도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세자익위사 익위가 낭청의 구성원이었다. 이렇게 볼 때 희빈 장씨의 책례는 세자를 보양하고 그 지위를 보위하기 위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의례가 준비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숙종은 종사의 대계를 잇는 일을 중시여기고 원자를 세자로 삼는 이유에 뜻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사(後嗣)에게 화(禍)를 끼치게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과궁(寡躬)의 실덕(失德)을 감수하겠다. 이는 실로 국가의 흥망성쇠에 관계되나, 내조의 공을 바랄 수 없고 종묘사직을 섬길 수 없는 자이니, 드러내어 폐출하는 일을 늦출 수 있겠는가?⁶⁰

내가 나이 서른에 비로소 어린아이를 보는 즐거움을 알았고, 조종(祖宗)께서

59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5월 14일(갑진).

60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5월 4일(기해).

이어 오신 통서(統緒)를 이제 다행히도 부탁할 사람이 있다.⁶¹

내가 즉위한 뒤로 오랫동안 아들을 얻는 상서가 없어, 스물여덟의 한창 나이에도 아버지가 되지 못하여, 3백 년 동안 전수(傳授)하여 온 기업(基業)이 내 몸에 와서 잘못될까 염려하였다. 뒷일에 의지할 곳이 없어 궁중에서 어린아 이를 보는 낙이 없고, 국본(國本)이 불안하여 전국이 목을 늘여 기다리더니, 무슨 다행으로 하늘이 복을 내려 전성(前星)의 경사가 있게 되었는가?⁶²

이는 중국의 고사를 원용하여 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대한 장래를 생각하여 한 것으로, 실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하늘에 계신 조종의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서 내려다보시고 우리 동방을 보우하기 위해 원량(元良)을 탄생 시킨 것이다.⁶³

숙종은 이처럼 종사의 대계를 잊는 일을 중시 여겼는데 이는 그의 사망 후에 벌어질 왕위계승의 문제 때문이었다. 숙종은 어린 나이에 즉위했고 더구나 갖은 질병에 시달렸다. 숙종 4년 2월에도 숙종은 천연두에 걸려 한 달이 지나서 나았는데 숙종의 환후를 둘러싸고 당시 정치세력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가능성들이 제기되었다. 이때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자는 인평대군의 아들들인 삼복형제와 소현세자의 손자인 임창군 이곤과 임성군 이황이었다.⁶⁴ 숙종 15년에도 숙종은 민희빈 강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상소하였던 김홍육(金弘郁)과 같은 무리가 장차 일어나서 국가에 화를 전가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를 보였다.⁶⁵ 숙종은 이러한 점에서 왕위계승의 문제를 고려하였고 후사를 안정적으로 계승시키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세자가 ‘장자’인 것은 원자의 정호를 통해

61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 6월 16일(을해).

62 위의 자료.

63 『숙종실록』 권20, 숙종 15년 4월 23일(기축).

64 이상식(2005), 앞의 논문, 32-33쪽.

65 『숙종실록』 권21, 숙종 15년 5월 3일(무술).

해결하였지만 세자의 왕위를 안정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적자’의 지위도 부여되어야 했다. 결국 희빈 장씨의 책례는 생모의 신분을 의례를 통해 변화시킴으로써 종친문무백관과 명부가 희빈 장씨를 군모(君母), 국모(國母)로 인정하는 지위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었다.

V. 맷음말

본고는 희빈 장씨의 왕비 책례를 통해 후궁의 왕비 책례 의절을 일반적인 책비의절과 비교 검토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 의례를 통한 왕권 구현 방식 속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밝히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희빈의 왕비 책례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책례의 준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희빈 정씨가 왕자를 출산한 후 숙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후궁 소생의 왕자를 원자로 정호하여 장자의 지위를 분명히 하였다. 이후 숙종은 선왕과 선후의 말을 거짓으로 가택한 인현왕후를 폐비시키는데 신하들에게 군모에 대한 절의를 지킬 것인지 군부를 따를 것인지 양자택일의 배수진을 치고 인현왕후를 폐비시킴으로써 왕후의 빈자리를 만들어냈다. 숙종은 특히 정호 후 고묘, 반교라는 변례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행해 냄으로써 책례 전의 희빈 장씨가 궐내에서 진상이라는 물질적 측면의 보장을 받는 지위일 뿐만 아니라 종묘에 아뢰고 백성들에게 공표된 지위에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었다. 그리고 동평군 이항을 주청사로 삼아 청나라 황제의 임명장인 고명을 받음으로써 대외적으로도 왕비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 후 책례 의식을 거행하기 4개월 전에 책례도감을 설치하여 의식의 거행에 만전을 기하였다.

둘째, 희빈 장씨의 왕비 책례 의절이 책봉 의례의 전형인 『국조오례의』 책비 의주와 전례를 반영하여 구성하였음을 살펴보았다. 희빈 장씨의 책비 의주는 전례에서 소략하게 기록된 경우 자세하게 기록하여 행례의 공간, 의물, 참여자들이 철저히 행례를 지키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례에서 생략하거나 권정하였던 의절은 전례에 따랐고, 왕비 관련 제구는 가례와 책례 전례를 참고하여 조정하였다. 이처럼 후궁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의례를 더 과장되거나 화려하게 구성하기보다는 전례에 따라 책례 의절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이를 위해 수책 의주를 가장 앞에 배치하여 왕비 책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왕비에게 전달하는 교명의 축을 제작하거나 의대 제구 등을 만드는데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로써 ‘비정상적’이었던 책례는 ‘정상적’이었던 다른 책례와 같이 내명부, 외명부, 종친문무백관의 배례와 치사를 받고 상전의 복명을 받는 명부의 수장으로서 왕비의 권한을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를 전유할 수 있었다.

셋째, 숙종이 변칙적인 이 사례를 전례와 전형의 의주 절차를 준수하면서 거행함으로써 추구하고자 하였던 바를 검토하였다. 먼저 희빈 장씨의 왕비 책례가 세자 책례와 연결선상에서 거행되었음을 밝혔다. 세자의 책례와 희빈 장씨의 왕비 책례 도감 구성원이 세자시강원, 익위사로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희빈 장씨의 보위를 세자의 보위와 밀접하게 연관하여 인식하였던 것이다. 또한 숙종의 언사를 통해 숙종이 그의 사망 후에 벌어질 왕위계승의 문제 때문에 종사의 대계를 잇는 일을 중시 여겼음을 포착하였다. 결국 희빈 장씨의 정상적인 왕비 책례 거행은 왕가의 계승에 있어서 세자의 존귀함과 연결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희빈 장씨의 책례는

책례 본연의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세자 생모의 신분을 의례를 통해 변화시킴으로써 종친문무백관과 명부 모두가 희빈 장씨를 군모, 국모로 인정함으로써 세자의 적자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정치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선조실록』, 『숙종실록』, 『동문휘고』, 『禧嬪中宮殿冊禮都監儀軌』, 『仁敬王后冊禮都監儀軌』.

2. 단행본

- 권오영 외, 『조선 왕실의 嘉禮』 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서울대학교 규장각 編, 『규장각 소장의궤 해제집』 3.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신명호, 『조선왕실의 책봉의례』. 세창출판사, 2016.
이미선, 『조선왕실의 후궁』. 지식산업사, 2021.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藏書閣所藏儀軌解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2.

3. 논문

- 고영진, 「17세기 후반 근기남인학자의 사상」. 『역사와 현실』 13, 1994, 160-182쪽.
丘凡眞, 「崇德年間 清朝의 朝鮮 王室 冊封과 冊封文書」. 『명청사연구』 52, 2019, 71-106쪽.
권선흥, 「유교문명권의 국제관계: 책봉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2, 2010, 103-134쪽.
_____, 「조선시대 중국과의 책봉 조공관계에 대한 인식」. 『國際問題論叢』 12-13, 2002, 81-104쪽.
김경록, 「조선시대 봉전을 위한 입장과 고명의 역사적 의미」. 『명청사연구』 52, 2019, 1-36쪽.
김경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조선 왕실의 교명(敎命) 장횡(粧橫)」. 『古宮文化』 제2호, 2008, 60-83쪽.
김남윤, 「정조의 왕세손 책례 연구」. 『규장각』 37, 2010, 217-250쪽.
나영훈, 『조선시대 도감의 성립과 변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6.
손계영, 「敎命의 형태 연구: 藏書閣 所藏 『懿昭世孫冊封敎命』과 『慶嬪金氏據嬪冊封敎命』을 중심으로」. 『장서각』 11, 2004, 103-128쪽.

- 孫成旭, 「王世子 冊封으로 본 清·朝 관계」. 『東洋史學研究』 146, 2019, 193–230쪽.
- 신명호, 「조선 왕비와 명 황후의 책봉의례 비교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33, 2012, 219–238쪽.
- 유재빈, 「정조의 세자 위상 강화와 문효세자책례계병(1784)」. 『미술사와 시각문화』 17, 2016, 90–117쪽.
- 윤승희, 「조선초기 조선국왕 책봉의례의 정비와 그 특징」. 『朝鮮時代史學報』 85, 2018, 83–112쪽.
- 윤정, 「정조의 세자 책례 시행에 나타난 ‘군사’ 이념」. 『인문논총』 57, 2007, 271–298쪽
- 윤혜민, 『17세기 후반 국왕의 정국운영과 戚臣의 역할: 효종·현종·숙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이상식, 「조선후기 숙종의 정국운영과 왕권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이선홍, 「조선 후기 李昀(景宗)의 세자 책봉 奏請 문제에 관한 일고찰」. 『韓中關係研究』 2-2, 2016, 89–101쪽.
- 장을연, 「清代 조선왕실 冊封誥命과 조선 教命의 형태 비교연구」. 『藏書閣』 제24집, 2010, 135–168쪽.

국문초록

본고는 희빈 장씨의 왕비 책례를 통해 후궁의 왕비 책례 의절을 일반적인 책비의 절과 비교 검토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 의례를 통한 왕권 구현 방식 속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밝히고자 작성되었다.

우선 희빈 장씨가 왕비 책례를 거행할 때까지의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희빈 장씨가 책비 의례를 거행하기 전에 이미 궐내에서 진상을 받는 지위였고, 고묘 및 반교 등을 통해서 그 국내외적 지위가 공표되었음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책비 의절의 구성과 예문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희빈의 왕비 책례는 변칙적인 사례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절차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전례를 반영하면서도 책비의 전형인 『국조오례의』 예문을 자세히 기입하여 의주를 완성하고 본래 책비 의례의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그 상징적 의미를 전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희빈 장씨의 책례는 세자 생모의 신분을 의례를 통해 변화시킴으로써 종친문무백관과 명부 모두가 그녀를 국모(國母)로 인정하게 하고 세자의 적자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정치적 함의가 내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투고일 2021. 3. 22.

심사일 2021. 4. 25.

제재 확정일 2021. 5. 3.

주제어(keyword) 장희빈(Heebin Jang), 숙종(King Sukjong), 책봉(冊封, Investiture), 책례(冊禮, Investiture Ceremony), 책례도감의궤(Chekrye-dogam-uique), 후궁(後宮, Concubine), 왕비(王妃, Queen)

Abstract

The Queen Investiture Ceremony of Heebin Jang and the Implications, in the Reign of King Sukjong of Joseon Dynasty Park, Mi-sun

This study intended to clarify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queen investiture ceremony of concubine Heebin Jang by comparing the procedure with that of the Crown Princess' investiture ceremony after Boomyo.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examined the situation before the queen investiture ceremony of Heebin Jang. King Sukjong deposed queen Inhyeon and got Heebin Jang as his new queen after Heebin Jang gave birth to her prince, and then he reported that to Jongmyo Shrine and Sajik. He also proclaimed the fact all over the country that he had appointed Heebin Jang as the new queen. This was an unprecedented ritual and was made with King Sukjong's strong will. In addition, he sent a messenger to the Qing Dynasty in order to receive Gomyong (rescript from the emperor) of the Qing Emperor. As a result, Heebin Jang could formalize her queen's status internally and externally before her queen investiture ceremony.

Second,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procedure of Heebin Jang's investiture ceremony of queen wa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 of the royal ceremonies and the queen's marriage. Certain ceremonies were not performed in the same way if they were omitted or temporarily suspended from the queen's investiture ceremonies that was previously held. On the other hand, by recording the ceremonies in more detail, it was possible that the participants of the ceremonies were able to perform the ritual more thoroughly. Meanwhile, the study checked that the clothing and decorations that Heebin Jang had worn in the ceremony were reflected by referring to the clothes and decorations at the queen's wedding.

Third, the queen investiture ceremony of Heebin Jang wa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rituals of the Crown Prince's investiture, and that shows the implication to link to the royal respect and dignity. The examination shows that a large number of members of the 'Chekrye-dogam for the Crown Prince

and Heebin Jang were duplicated, and especially they were those who were in the ‘Sejasigangwon (Tutorial Office for the Crown Prince)’. Through King Sukjong’s remarks, the study could confirm that Sukjong attempted to clarify the status of the next successor to prevent the problem of succession to the throne that would occur after his death.

In these respects, It is confirmed that there were political implications in the queen investiture ceremony of Heebin Jang. The rituals not only revealed the symbolic meaning as the head of the whole court ladies but also changed her status into the mother of the Crown Prince. That is, that was intended to make all the royal clan, Munmubaekgwan, and the court ladies recognize Heebin Jang as the national mother, which was to strengthen the status of the legitimate prince.